

■ 법률 칼럼

종교비자(R-1)와 종교이민(I-360)

1. 종교비자

종교비자란 성직자 혹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미국의 해당 종교 기관이나 단체에서 활동하기 위해 미국 체류를 허락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의 합법적인 취학은 가능합니다.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종교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총 60개월입니다.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자를 스폰서하는 기관은 '종교적인 기관'이어야 합니다. 스폰서 기관이 교회이면 이 스폰서 기관은 종교성은 충족이 됩니다.

둘째, 교단은 비영리 세금 면제 단체이어야 합니다. 최근의 이민국은 종교 단체가 세금을 면제 받은 단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미국세청의 IRS 501 (C) (3) 편지 또는 면제기관인 교단 산하에서 그룹 면제(Group Exemption)를 받고 있다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교단은 종교직 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종교적인 성격이어야 합니다. 즉, 비자 신청자는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거나 안수 목사님은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고용인이어야 합니다. 안수 목사의 신분은 안수와 안수 과정에 관한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안수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종교직 종사자로서 종교비자(R-1)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이민국이 안수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신청자는 실제로 그를 후원하는 스폰서기관의 일원(membership)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종교 비자를 신청하기 직전에 최소한 2년 동안 그기관의 일원인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종교비자를 스폰서하는 교회가 성결교 교단에 속해 있다면 신청인은 성결교단에서 2년 이상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단이 다르더라도 스폰서 교회를 2년 이상 출석하셨다면 2년 멤버십 요건이 충족됩니다.

여섯째, 신청자는 그 직무를 위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경우에는 안수를 받았고 안수에 앞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목사님이 아닌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종교이민

종교비자가 종교기관에서 종교직에 종사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인데 반해 종교이민은 종교기관의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경우입니다. 즉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종교비자의 경우는 2년의 멤버십을 증명하면 되지만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스폰서 종교기관에서 2년 이상 사역(사례)을 받고 2년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차는 스폰서 교회가 I-360이라는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 청원서가 승인이 난 후에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일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장의사의 바람

한 교회에서 발간한 교지를 읽었다. 거기에는 몇 달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한 아들의 글이 실려 있었다. 고인의 장례를 내가 집례하였기에 더욱 관심이 갔다.

간혹 돌연사나 사고사로 인해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연사, 병사 등 한 생을 오롯하게 향유하시고 귀향하시는 분들을 만난다. 연로하셔서 몸이 작아진 할머니들을 볼 때 '이렇게 작은 몸으로 어떻게 자식 다섯 여섯을 키우셨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종이 가까워지면 수척해진다. 병마와 싸웠던 사람들은 임종 후에도 그 흔적들을 그대로 안고 있다. 병원에서 운명하시면 소생시키고자 몸에 부착시켰던 병원의 모든 호스도 그대로 부착한 채 장의사로 보낸다.

장의사는 망자가 안장될 때까지 시신 처리와 장례 예식 등 장례와 관련한 책임을 지는 주 정부가 허락한 기능이다. 라이선스를 가진 장의사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누구나' 가 누군가이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몇몇 권사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난 아무 염려 없어. 우리 이 집사가 다 해 줄거니까." 호흡이 끝난 후에 그들의 육신을 책임져 줄 사람임을 알기에 위안이 된다는 말씀은 나에게 격려가 된다.

모든 장의사는 맡겨진 일에 충실히 임하며 장례를 어려움없이 치르도록 노력한다. 그런데 장례 전문인으로 '내가 모실 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일찍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인간은 영혼의 소유자이기에 임종의 시간이 오면 담담히 그리고 편안히 사

별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죽음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회피하는 것이 이미 거기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미리 준비한다.

우리 교회 권사님 말씀처럼 누가나의 마지막 수발을 들 것인지 알면 마음이 더욱 편해질 수도 있다. 임종의 시간은 본인의 심리 상태와 의지와도 관련이 있다. "○○씨 만나서 반가워. 내가 떠나고 난 뒤 남기고 가는 내 몸 잘 부탁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시는 님의 삶, 일생을 간접적으로라도 먼저 알게 된다면 장례인의 마음가짐도 달라지리라. 이는 고인의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장례는 가족과 장례인이 함께 치르는 예식이기에.

앞서 언급한 교회 교지에 글을 실은 아들은 어머니의 97년 생애를 추모하며 어머니의 어린 시절, 딸이었기에 펼치지 못했던 향학의 열정, 출생과 함께 짊어졌던 민족적 아픔과 역사적 가난, 그 가운데서도 자식들 교육시키시고, 자식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심에 감사하는 마음,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토로 하였다. 안타깝게도 고인에 대해 아는 사실은 환송예배 중 짧게 언급된 약력뿐이었다.

"아, 지난 겨울 내가 모신 권사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권사님을 모시기 전 혹은 장례 기간 중이라도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도 즐겨보세요!!

생활, 법률, 건강 등의 다양한 칼럼, 여행, 요리, 부동산, 사진, 영화, 사고팔고, 구인구직 매매임대 등의 다양한 생활정보와 한인사회 소식, 지면보기(pdf신문보기)까지

<타운뉴스 QR코드>



townnewsusa.com

타운뉴스 홈페이지 접속 방법

1. 스마트폰 카메라로 왼쪽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타운뉴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주소창에 왼쪽의 타운뉴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문
쉽고, 빠르게 타운뉴스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온라인 홈페이지: townnewsusa.com